

서울서부지방법원 2021. 11. 30 선고 2021가단221181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재판경과

서울서부지방법원 2022. 5. 13 선고 2021나50755 판결

서울서부지방법원 2021. 11. 30 선고 2021가단221181 판결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B

피 고 C

변 론 종 결 2021. 10. 26.

판 결 선 고 2021. 11. 30.

주 문

1.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와 소외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들에 관하여 2021. 2. 21. 체결된

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5,675,559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5,675,55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인정사실

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, 갑 제1 내지 8호증, 갑 제9호증의 1, 2, 3,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.

가. 주식회사 E은 2015. 8. 13.경 소외 D에게 300만 원을 이자율 연 34.4%, 변제기 2016. 6. 17.로 정하여 대여하였고(이하 ‘이 사건 대여금 채권’이라 한다), 2016. 4. 29.경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. 채원양도통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원고는 같은 해 5. 30. D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위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(송달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). 2021. 5. 10.을 기준으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합계 5,675,559원(원금 2,951,882원 + 이자 2,712,677원)이 되었다.

나. 소외 F는 1987. 12. 11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주택’이라 한다)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21. 2.경까지 위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같은 달 21. 사망하였다. 피고는 2021. 3. 29.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같은 해 2. 21.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(이하 ‘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’라 한다).

다. 한편 F의 사망 당시 F의 재산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와 아들인 D, G이 있었다. D은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주택의 상속지분(2/7) 이외에 시가 185만 원 상당 모닝 자동차 1대를 소유하고 있었고, 소극재산으로는 신용정보원 조회결과에 따르면 10,054,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다.

라. 피고는 1998. 2. 16. 이 사건 주택으로 전입한 이래 현재까지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. D은 1987. 12. 29. 이 사건 주택으로 전입하였다가 1997. 10. 11. 대구 남구 H으로 전출하였고, 다시 2004. 7. 1. 이 사건 주택으로 전입하는 등 2015.경까지 이 사건 주택으로의 전출입을 반복하다가 2017. 10. 20. 대구 달서구 I로 전출하여 현재까지 위 곳에

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.

마. 이 사건 주택에는 2010. 10. 18.자로 채권최고액 3,900만 원, 근저당권자 J조합(이후 K조합로 변경), 채무자 F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. 피고는 2021. 3. 29. F와 K조합 사이의 대출계약을 인수한 다음 같은 날 근저당권변경등기의 부기등기를 마쳤다.

2. 원고의 주장

D이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은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, D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,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. 따라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고의 채권액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, 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무자명의를 피고로 이전되었으므로 가액배상이 아닌 D의 상속지분 범위 내에 있는 원고 채권액의 지급을 구한다.

3. 판 단

가. 보건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채무자인 D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고 하더라도,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, 즉 망 F는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한 이래 그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인 D, G 등과 함께 수 십 년간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여 왔고, 피고 또한 F가 사망한 이후에도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, 반면 D은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,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소액인 점에 비추어 D이 원고 등 일반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본인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,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의 구체적 내용도 알 수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, 원고 주장의 사정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D의 사해의사를 단정하기 어렵다.

나. 따라서 D의 사해의사를 전제로 하는 원고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4. 결 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김선희

부동산의 표시

[건물] 대구광역시 남구 호

건물내역 : 목조와즙 평가건본가 1동 건평 12평6홙5작

<이중 의 상속지분전부 >

[토지] 대구광역시 남구

대 136㎡

<이중 의 상속지분전부 >

[토지] 대구광역시 남구

도로 7㎡

<이중 의 상속지분전부 >

- 이 상 -

